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23

발의연월일: 2021. 8. 25.

발 의 자: 장철민·강훈식·김영호

백혜련 • 서영교 • 안호영

오영환 · 윤준병 · 임오경

조정훈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일용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월간 근로일수만 적혀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가목 중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을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일수의 3분의 1"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직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	
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만 해당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가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u>안의 근로일수가 10일</u> 미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
만일 것	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
	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u>총 일수의 3분의 1</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